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78)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강제퇴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나 법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사전협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사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2조의5를 신설하여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